第254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6月2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간사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재구성의 건
- 3. 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보고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 건	. 1
О	간사(이종걸)인사	. 1
2.	소위원회 재구성의 건	. 2
3.	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보고	. 2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이강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전춘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강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제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제항 위원**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강래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걸 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새로 보임되어 온 이종걸 위원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두 분 위원님의 정개특위 보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4시25분)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 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열린우리당 간사이셨던 유시민 위원 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종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종걸 위원님을 열린우리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종걸)인사

○위원장 이강래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종 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 다.

○이종걸 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새로 간사로 선임된 이종걸 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1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정치개혁 관련된 입법들이 저희들 과제로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국민이 바라는 열린 제도

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종걸 위원님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2. 소위원회 재구성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이강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회 재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공직선거법소 위, 정당법소위, 정치자금법소위로 구성된 소위원 회를 선거법소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 정당법및 정치자금법소위로 재구성해서 소위원회를 생산적 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인원은 선거법소위는 8인으로 하고 지방선거관련법소위와 정당법및정치자금법 소위는 각각 6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할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 보고

○위원장 이강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치개 혁협의회 정치개혁안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고는 정치개혁협의회실무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현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김종현 전문위원입니다.

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협의회의 연혁과 구성 및 개혁안의 기 본방향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2쪽 하 단의 개혁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하여는 첫째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을 갖춘 인 사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와 비례대 표의 비율을 조정하여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56인 에서 99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상한을 현행 3 대 1에서 2.5 대 1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선거일에 투표를 할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국외 체류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교관·유학생 및 상사주재원 등에게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국외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새겨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원칙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위주의 현행 규제 체제를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 를 도모하였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계좌확인권을 부여하는 등 선관위의 실 사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계좌확인권의 행사는 사법적통제 및 고발을 전제로 하도록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였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8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공보 등 선거인쇄물을 점자로 제작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였고, 유권 자의 후보자 선택에 효과적인 후보 간 방송토론회 참가를 의무화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는 방송을 통하여그 불참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공영제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였습니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해당 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경우 에는 50%, 10%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75%,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의 기탁금 및 선 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환수 요건은 보다 강화하여 선거범죄 등으로 기소된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하거나 피선거권의 상실 또는 등 록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탁금 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공영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활정치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추구하였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진출하여 풀뿌리 민 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광역 의원의 비율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과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 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직을 56인에서 99인으로 확대하고 광역의원 비례직을 10.7%에서 30%로 확대하며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비례직 비율을 30%로 하도록 함으로써 각급 선거 비례직을 통해 여성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여성후보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후보자의 범죄 기록은 벌금형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일 3일 전까지는 공표할 수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함으로써선거법에 대한 규제 중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치자금의 조달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금을 기부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며 국회의원 당선 자가 임기 개시 전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한편, 소위 경상보조금의 당비와 후원금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2006년 3월 이후에도 계속 둘 수 있도록하여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하여 1인당 월 500만 원, 연간 3000만 원 한도내에서만 당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였습니다.

경상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각 정당이 진성당원 위주로 운영되도록유도하였고 국민의 민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우선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을 배분 대상으로 하되 그 반영 비율은 국회의원선거 50%, 지방선거 25%, 대통령선거 25%로 하였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 여성을 공천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5% 이상, 15% 이상 또는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여성추천보조금 총액 중에서 30%, 50% 또는 100%를 각각 현행 배분방식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 사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후원금 기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공개대상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기관, 직위 및 기부액수에 한정하도록 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당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였 습니다.

정당 간의 정책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선거 없는 기 간에도 1년에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정당화를 지향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 후보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 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내 경선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이 선관위에 경선관련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 한 사무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 비례대 표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례대표후보자 등록 시 관련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당 운영의 경량화와 저비용 정당정치 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중앙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는 현행 100명 한도를 유지하고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와 관련하여 정당별 전체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의수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총원을 제한하였으며 고비용 정당구조의 주요인이었던 지구당은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 후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정당도 연대하여 보전된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남녀교호순번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비표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문제의 성격으로 봐서는 정개협 위원장님이셨던 김광웅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옳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실무 보좌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 내용을 잘 듣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개협은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내용을 답변할 만한 지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저희들이 접수하고 질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이 점에 관해서 토론할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질의는 오늘 회의에서 생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이종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조금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월 전체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6월에이게 마무리되지 못하면 12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을 다루기가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6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전체 일정이라든 가 소위 일정이라든가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말씀 을 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저희 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마는 그동안에 정개협의 활동도 있고 그래서 구 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 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은 이번 6월 말입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7·8월은 어차피 임시국 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기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 본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면 이 논의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연말까지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치개 혁특별위원회를 과거보다 앞당겨서 설치했던 취지나 의미 자체가 다 상실되어 버리고 또 내년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커다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정말 시간을 아껴서 소위원회 활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대체로 검토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결정했던 소위별로 바로 회의를 시작해서 늦어도 6월 23일까지는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 에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도저히 시간 때문에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은 장기과제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 이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합의 도출을 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 치르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초점을 둬서 논의를 해서 소위 별로 바로 논의를 시작하고 늦어도 6월 2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다는 자세로 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금 본래 상임위원회를 갖고 계시고 그 쪽 일도 대단히 바쁘시고 중요하실 텐데 그러나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우리 정개특위 일정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십 사라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고, 제가 짧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3개 소위로 되어 있던 것을 선거법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소위를 설치하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정개협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할 양이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합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치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연계해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면 양쪽 다, 선거법이나 지방선거 관련된 제도가 서로 각각 부담될 수있기 때문에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적극 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개협 보고를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받았는데 정개협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들 안 계십니까?

박형준 위원님!

○박형준 위원 우선 여기 소위원회 구성에서 한

나라당 간사 선임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선거법소위는 이명규 위원님이 간사를 맡기로 하셨고 지방선거관련법소위는 권오을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기로 했고 정당법소위에는 권영세 위원님이 간사를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간사 합의에 의해서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에 소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일단 해서 전체적인 일정이나 소위원회별 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박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형준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준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이제 곧 종료하겠습니다마는 전체회의 이후에 새로 구성 된 소위별로 따로 모이셔서 앞으로 소위 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특위를 보좌하는 실무진들은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보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 일정상 다음 주, 그다음 주 2주 동안은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와 중복이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좀 이따 소위에서 일정을 잡아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체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산회)

○出席委員(13人)

고 흥 길 구 논 회 권 오 을 김 기 현 김 선 미 노 회 찬 박 형 준 백 원 우 우 제 항 이 강 래 이 명 기 이 인 기 이 종 걸 이 화 영

○出張委員(1人)

이 상 열

○出席専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장 인 식전 문 위 원김 종 현

【報告事項】

○委員辭任以補任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문병호	우제항	열린우리당
(4월8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유시민	이종걸	열린우리당

(4월18일)

○議案回附

政黨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3월25일 송영길·김영춘·김부겸·이종걸· 임종석·우상호·김현미·최재성·강기정· 박영선·김영주·정청래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서 병수 의원 대표발의)

(3월25일 서병수·김재원·이명규·김정훈·

유정복 · 김태환 · 심재철 · 김석준 · 안경률 ·

박승환 · 허태열 · 유기준 · 안병엽 · 이혜훈 ·

정의화ㆍ이계경ㆍ김희정ㆍ서재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29일 회부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장 향숙 의원 대표발의)

(4월11일 장향숙ㆍ이기우ㆍ이근식ㆍ김한길ㆍ

유필우 · 허태열 · 유선호 · 엄호성 · 장윤석 ·

전재희 · 김영춘 · 최재천 · 이시종 · 최구식 ·

노현송 · 이혜훈 · 김태년 · 최인기 · 강혜숙 ·

유승희 · 윤호중 · 정화원 · 신국환 · 임종석 ·

유정복 · 이원영 · 진수희 · 정장선 · 이해봉 ·

안민석·김재경·서혜석·박영선·김태홍·

김재홍 · 현애자 · 박재완 의원 발의)

4월12일 회부됨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 원 대표발의)

(5월3일 민병두·이상민·강기정·노웅래· 윤호중·정청래·이은영·김원웅·유승희· 선병렬·이경숙·이광철·김재윤 의원 발의) 5월4일 회부됨.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 정복 의원 대표발의)

(5월25일 유정복·김종률·이해봉·김태환· 노웅래·이혜훈·이인기·황우여·고진화·

이재창・김영춘・이시종・박세환・유기준・

박성범·엄호성·허태열·서재관·안상수·유승민·안경률·권오을·정두언·공성진· 정성호·김재홍·유필우·박재완 의원 발의) 5월26일 회부됨